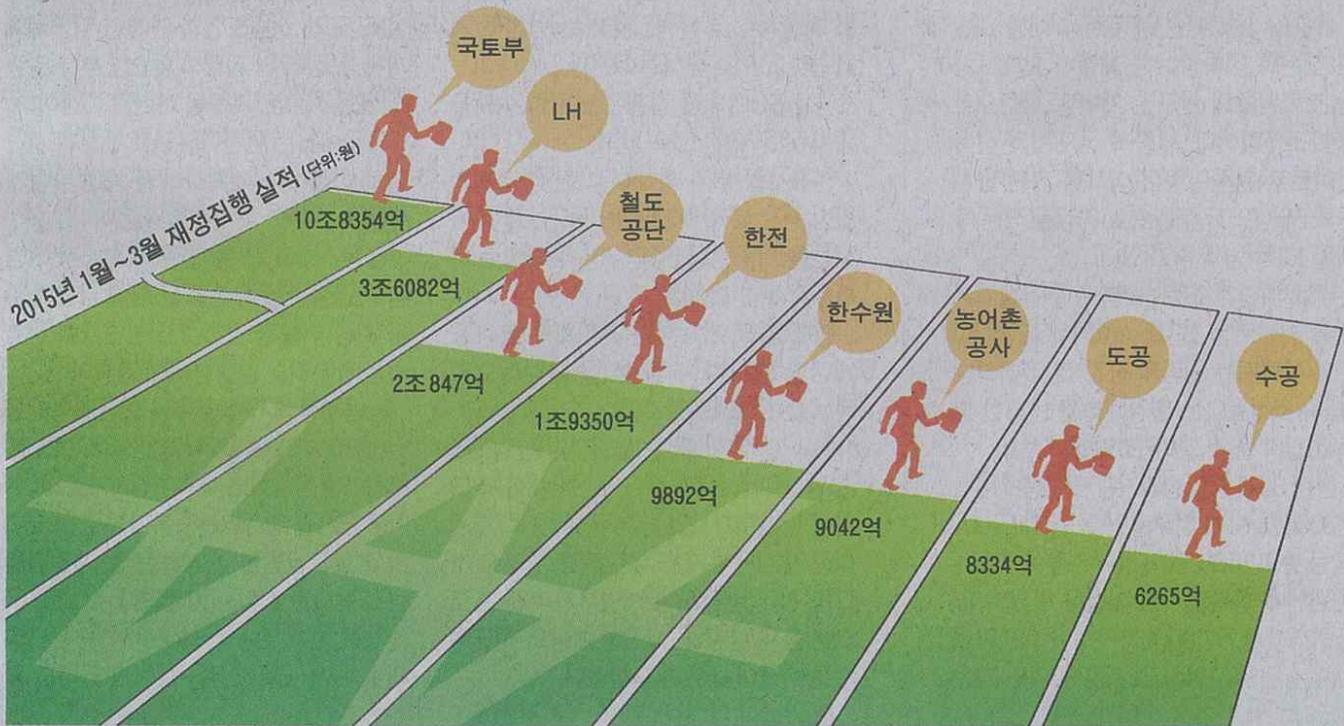


SOC 예산집행 ‘속도’ 붙었다

올 들어 지지부진했던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이 점차 탄력을 받고 있다.

대규모 SOC 투자를 맡고 있는 부처와 발주기관의 재정 집행률이 평균치를 밑돌다가 지난달 들어 일제히 증가폭을 확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재정집행 실적은 5조2994억원으로 전월 대비 70.8% 증가했다. ▶관련기사 2면



국토부는 올 1월 2조4329억원의 재정을 집행한 이후 2월 들어 전월보다 30% 가량 많은 3조1031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중앙부처의 평균 재정 집행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5조원을 웃도는 재정을 집행하며 부진을 다소 만회했다.

전월에 재정 투입이 전무했던 일반철도와 고속철도 건설에 지난 한달 동안 각각 8878억원, 960억원을 썼고 전월까지 70억원에 불과했던 지방하천정비지원에도 무려 4215억원을 투입했다.

고속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에 사용한 예산은 각각 2800억원, 862억원으로 전월(1684억원·768억원) 대비 26.3%, 12.2% 각각 늘어났다.

국토부는 물론 발주기관의 재정집행에도 서서히 속도가 붙고 있다.

중앙부처 평균 밑돌던 국토부
지난달 5조2994억 집행
전월보다 70.8%나 증가
LH·수공 등 서서히 확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조4097억원 규모의 예산을 건물공사비와 조성비 등에 사용했다.

올 1월 1조1033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서 2월 들어 1조952억원으로 예산 집행 규모가 소폭 줄었지만 지난달 들어 다시 28.7% 늘어나며 증가 추세로 전환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난달 실적은 전월(4238억원)의 3배 수준에 달하는 1조2334억원을 기록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전월(7826억원)보다 41.1% 증가한 1

조1064억원의 예산을 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월(1455억원)의 5배를 웃도는 7386억원 규모의 예산을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에 사용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건설과 발전시설 보강 등에 전월(2416억원) 대비 124.1% 증가한 5414억원을 투입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지난달 집행 규모가 4697억원으로 전월(3251억원)보다 44.5% 증가했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전월(694억원)의 6배에 가까운 3859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와 발주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면서 “재정집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상반기 중 59% 조기집행 추진”

기재부, 국회 업무보고... 확장적 재정운용 기초 재확인

지난달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집행을 크게 확대한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에 더욱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중 예산의 59% 이내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 불씨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연초 SOC 예산 집행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규사업 투자 확대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등으로 발주기관들이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면서 SOC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때까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위험분담형(BTO-rs)과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롭게 도입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활용해 7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고 투자 리스크를 적극 분담하는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올해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디딤돌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내집 마련 지원으로 전세에서 매매 수요 전환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핵심분야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분야의 경우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들부터 후속 입법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 60세 정년도입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 등 정부 법 집행이 필요한 부분은 판례 등을 기초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에서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난 달 출범한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금융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자본시장 기능 강화, 금융감독 쇄신 등을 통해 금융의 실물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입법화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보조금법을 개정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조치도 병행된다.

앞서 기재부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SOC 예산 확대와 조기집행, 부동산시장 회복세 등에 힘입어 건축·토목부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설비투자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수출도 부진한 것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아하! 그렇구나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 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1. 사건 개요

발주기관은 이 사건 교사의 철거 및 개축(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고 한다)을 위하여 총 4차에 걸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1차 공사는 A가, 2차 공사와 3차 공사는 B가 각각 담당하였으며, 3차 공사 중에 위 B가 부도를 내자 연대보증인인 C가 마무리 공사를 담당하였고, 발주기관은 C와 4차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C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발주기관이 C에게 이 사건 전체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자 C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과 같은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차수별 계약 상대방자가 모두 상이한 경우 최종 수급인이 전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국가계약법 규정들과 함께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당해 공사의 수급인이 그 공사 완공 후 목적물에 관하여 부담하게 될 하자보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도급인이 당해 공사 수급인 이외의 자에게 그 공사의 하자보수 의무나 이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는 그와의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함은 사법계약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 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 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

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의 연차 계약별로 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 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C는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4차 도급계약만을 수급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4조에는 "계약 상대방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국가계약법 제6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발주기관과 C 사이에 C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나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는 발주기관에 이 사건 4차 계약과 관련한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만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전체 공사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발주기관과 장기계속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차수별 계약 상대방자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상이하게 된 경우 최종 차수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체 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김성근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법무법인 동인)

